

서울특별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의안 번호	2385
----------	------

제출년월일 : 2021년 5월 25일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1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내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이하 “시범운행지구”라 한다)의 운영 및 자율주행시설의 유지·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 촉진 및 지원 등을 위해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범운행지구 관련 정책을 자문 및 심의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신설함(안 제4조부터 제9조까지).

- 1) 시범운행지구 정책 등의 자문 및 심의를 위한 위원회를 설치함(안 제4조).
- 2)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
- 3) 안전분과위원회에 대한 설치 규정을 마련함(안 제9조).

나. 시범운행지구 내에서 여객운송사업을 위해 필요한 한정운수면허의 신청·발급 및 사업계획 변경, 면허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1) 한정운수면허의 신청·발급 절차를 정함(안 제11조).

2) 사업계획의 변경 및 면허기간 연장에 대한 사항을 마련함(안 제12조 및 제13조).

다. 자율주행자동차 운송플랫폼의 구축 및 운영 기준을 마련하면서, 민관 협력을 통하여 운송플랫폼에 민간 플랫폼 및 서비스를 활용·결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5조).

라. 자율주행자동차 운송사업의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 자율주행 관련 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 및 자율주행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를 신설함(안 제16조 및 제19조).

1) 자율주행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규정을 둠(안 제16조).

2)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 촉진을 위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19조).

마. 시범운행지구 내 자율주행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의 지정 및 주차요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 「자동차관리법」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참조

다. 기 타: 입법예고('21. 1. 28.~2. 17.)결과: 의견있음(별도 첨부)

서울특별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시설물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 촉진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이하 “시범운행지구”라 한다)란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구역·노선을 말한다.
2. “자율주행자동차 운송사업”이란 법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를 활용하여 시범운행지구에서 시행하는 유상운송사업을 말한다.
3. “자율주행자동차 운송사업자”란 법 제9조 및 제10조 등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를 활용하여 유상운송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4. “자율주행자동차 운송플랫폼”이란 수요에 대응하여 실시간으로 운송수단을 선택하고, 예약·결제를 체결하여 여객을 운송하게 하거나, 운송에 부가되는 서비스를 연결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5. “자율주행시설”이란 법 제2조제1항제3호 및 제18조에 따라 자율주행

자동차 연구·시범운행·여객운송과 관련된 자율주행협력시스템, 특화시설, 각종 편의시설 등 모든 시설을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뜻은 「자동차관리법」 및 「도로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범운행지구 운영·관리 및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위원회의 설치)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범운행지구 운영·관리 및 확대 등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정책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및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시범운행지구 기본정책과 확대에 관한 사항
2. 자율주행자동차 운송사업 관련 정책(재정지원, 요금정책 등) 및 안전 운행 관련 규정에 관한 사항
3. 자율주행협력시스템 등 자율주행시설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회가 시범운행지구 운영·관리 및 확대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제1호의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시범운

행지구 업무 소관 담당 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위촉직 위원: 공공기관, 연구원, 학교, 기업, 민간단체 중에서 자율주행 및 여객운송 관련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2. 당연직 위원: 시범운행지구 업무 소관 국장, 소관 과장
- ③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본문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내부·외부위원 구성비율의 공정성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시범운행지구 업무를 총괄하는 담당 사무관이 된다.
- ⑥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위원회를 설치한 날로부터 5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시장은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

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으로 위촉하여서는 아니 되고,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1.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희망한 경우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제6조에 따라 회피신청 대상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6.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심의 안건과 관련된 공무원 또는 전문가,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시장은 위원회의 회의 등에 참석하는 위원과 전문가에게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에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세부 기술적 검증 등을 위해 안전분과위원회를 둔다.

②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정한다.

③ 분과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④ 그 밖에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8조를 준용한다.

제10조(안전운행 준수) ① 시범운행지구 내에서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연

구·시범운행·여객운송을 위해 자율주행자동차를 운행하고자 하는 자는 「자동차관리법」, 「도로교통법」 등 안전운행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시범운행지구 안전운행과 관련된 규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폭우, 폭설 등 특수한 기상상황 및 자연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등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정한 일정기간 동안 시범운행지구 내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을 중지시킬 수 있다.

제11조(면허신청 등) ① 법 제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시범운행지구 내에서 자율주행자동차 여객운송사업의 한정운수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른 여객운송계획서
2. 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제2호에 따른 보험의 가입증서
3. 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임시운행허가증 사본
4.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규정」 제9조제2항에 따른 계획서
5. 안전운행 및 여객의 불편 최소화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여객운송 관련 안전운행 계획서
 - 가. 안전관리요원 탑승 등 사고예방 조치 및 사고발생 시 대처에 관한

사항

나. 운행 중 또는 운행 시작 전 고장 시 등에 대비한 여객의 이동 보장에 관한 사항

다. 한정운수면허 발급 전 사전 연습주행 기간 및 운행능력 검증에 관한 사항

라. 운행관련 데이터의 실시간 연계(자동차 내·외부 영상, 위치데이터, 고장유무 등)에 관한 사항

마. 폭우, 폭설 등 기상조건에 따른 수동운전 전환에 관한 사항

바. 운행구간 중 어린이보호구역 등에서의 수동운전에 관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한정운수면허를 발급함에 있어 그 발급과 연계하여 안전운행 검증을 위해 30일 이내의 시범운행기간을 포함하여 60일 이내의 범위에서 제9조의 안전분과위원회를 통해 자율주행자동차의 기술 및 안전운행능력 등을 검증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사업계획서 및 제2항의 기술 및 안전운행능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법 제9조제3항, 영 제8조제3항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4항에 따라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한정운수면허의 기간 및 운행범위 등을 정하여 한정운수면허를 발급할 수 있다.

제12조(사업계획 변경) ① 제11조에 따라 한정운수면허를 받은 자가 운행 노선·시간·요금 등 시장에게 제출한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별지 제1호서식의 자율주행자동차 여객운송사업 계획 변경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구 사업계획을 대비한 서류 또는 도면

2. 그 밖에 시장이 사업계획 변경과 관련하여 요구한 자료

② 시장은 사업계획 변경의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계획 변경을 인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실시간 수요대응을 위한 다음 각 호의 단순 변경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 운송플랫폼을 통해 전자적 방법으로 사업계획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

1. 실시간 승객의 예약 등으로 인한 수요대응을 위해 노선을 일시 변경하는 경우

2. 실시간 승객의 예약 등으로 인한 수요대응을 위해 정차하는 정류소를 일시 변경하는 경우

제13조(면허기간 연장) ① 제11조에 따라 한정운수면허를 받은 자는 한정운수면허를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면허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한정운수면허를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한정운수면허가 만료되는 60일 이전에 별지 제2호서식 자율주행자동차 여객운송사업 면허기간 연장 신청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한정운수면허 발급 기간 동안 여객 이용 현황 등 그간의 운행 실적 및 성과

2. 그 밖에 시장이 면허기간 연장과 관련하여 요구한 자료

③ 시장은 면허기간 연장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5년 이내

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면허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4조(준용규정) 자율주행자동차 여객운송사업 관련 운송개시 및 사업의 개선명령에 관하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조 및 제23조를 각각 준용한다.

제15조(플랫폼 구축·운영) ① 시장은 자율주행자동차 운송사업의 원활한 운영·관리를 위해 자율주행자동차 운송플랫폼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 운송플랫폼을 구축함에 있어 업무협약 등을 통하여 민간의 유사 플랫폼 및 서비스를 활용·결합할 수 있다.

③ 자율주행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제1항의 자율주행자동차 운송플랫폼 구축·운영에 필요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연계하여야 한다.

제16조(자율주행시설의 설치·관리 등) ① 시장은 시범운행지구에서 자율주행자동차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 제2조제1항제3호의 자율주행협력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범운행지구임을 운전자에게 널리 알리는 등 자율주행자동차의 운영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도로교통법」에 따라 경찰청 또는 서울특별시경찰청과 협의하여 시범운행지구 안내표지판, 자율주행자동차 전용 노면표시 등 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시범운행지구 내 자율주행시설을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시범운행지구 업무 소관 과장을 자율주행시설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자율주행시설 관리자는 자율주행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7조(성과공유) 시장은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정책의 추진 성과를 시민과 공유하기 위해 시민 체험행사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18조(민관협력 및 지원) ① 시장은 민간의 혁신적인 자율주행자동차 기술·제품·서비스의 홍보를 위한 해외진출 지원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범운행지구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공공기관, 연구원, 학교, 기업, 민간단체 등과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으며, 투자를 유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체에 참여한 공공기관, 연구원, 학교, 기업, 민간단체 등에 대해 자율주행협력시스템에서 수집되는 데이터의 제공, 자율주행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의 공간 제공, 전기차 충전소 이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민간과의 협력을 위해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데이터를 공공기관, 연구원, 학교, 기업, 민간단체 등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세부 규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9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자율주행자동차 운송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자율주행자동차 운송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1. 자율주행자동차 여객운송사업 관련 정류소 표지판 설치 및 도색 등 시설의 설치·유지비용
2.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을 위한 각 목의 사업비용
 - 가.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을 위해 필요한 시스템(영상기록시스템 등) 관련 비용
 - 나. 자율주행자동차 운송플랫폼과의 데이터 연계 관련 비용
 - 다. 운임·요금결제시스템 도입을 위한 시스템 관련 비용
3. 자율주행자동차 운송사업 관련 기술지원 및 운행 관련 비용
 - ② 시장은 재정지원을 위한 원가산정을 시행할 수 있으며, 재정지원과 관련된 기준 및 절차 등을 위한 별도의 규정을 마련할 수 있다.

제20조(자율주행자동차 전용주차구획) ① 시장은 자율주행자동차 산업의 발전과 유상운송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시범운영지구 내 서울특별시 시가 운영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과 서울특별시 출자·출연기관이 운영하는 부설주차장의 일부 주차구획을 자율주행자동차 전용주차구획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율주행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을 이용하는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율주행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이 지정된 주차장의 운영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주차요금 면제에 대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의 이용 및 주차요금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자율주행자동차 전용주차구획 이용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시장으로부터 자율주행

자동차 전용주차구획 이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서울특별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영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 [별지 제1호서식]

자율주행자동차 여객운송사업계획 변경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성명(법인명 및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사업의 종류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서울특별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영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변경 인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첨부서류	1. 신규 사업계획을 대비한 서류 또는 도면 등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검토	→	확인 및 협의	→	의사 결정	→	허가
신청인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 서울특별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영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 [별지 제2호서식]

자율주행자동차 여객운송사업 면허기간 연장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성명(법인명 및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사업의 종류			
면허연장 기간			
필요성 및 사유			

「서울특별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영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라 면허기간 연장 인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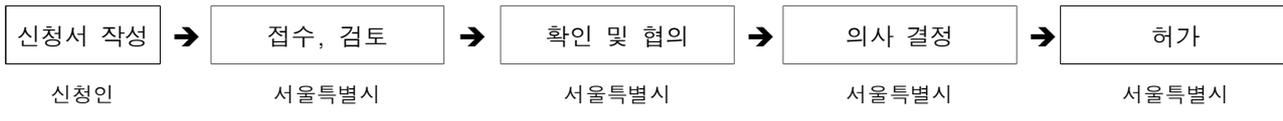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첨부서류	1. 면허 발급 기간 동안 여객 이용 현황 등 그간의 운영 실적 및 성과 등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 서울특별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 [별지 제3호서식]

자율주행자동차 전용주차구획 이용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성명(법인명 및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사용 목적 및 필요성			
자율주행 자동차 시범운행 계획			
사용 할 주차장 위치 및 면수			
사용기간			

「서울특별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 제20조제3항에 따라 시범운행지구 내 자율주행자동차 전용주차구획 이용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첨부서류	1. 주차면 이용 관련 시범운행지구 내 자율주행자동차 운행 계획서 1부. 2. 보험의 가입증서 1부. 3. 임시운행허가증 사본 1부.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검토	→	확인 및 협의	→	의사 결정	→	허가
신청인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안
비 용 추 계 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자율주행자동차법”이라 한다.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조성을 위해서는 시범운행지구임을 알리는 표지판, 노면표시 등 교통안전시설, 교통신호개방 등 자율주행 운행 지원 인프라(자율주행 협력시스템) 구축 비용이 소요됨.
- 또한, 자율주행자동차법 제9조제3항 등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를 이용한 유상운송의 경우, 자율주행자동차의 특수성(고가의 차량, 안전관리자 배치 등)을 고려할 때 유상운송 초기 손실이 불가피함에 따라 자율주행 기술발전 및 지속가능한 유상운송 모빌리티 창출을 위해서는 일정 부분 지원이 필요함.
- ※ 현재 지원 범위(금액 등) 및 정확한 비용 산출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 중인 상황으로 해당 용역 결과에 따라 비용은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다만, 자율주행자동차 기술 및 모빌리티 발전과 연계하여 자율주행 업체 스스로가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유상운송 초기 3년~5년 정도만 지원할 예정임 .

2. 비용추계의 전제 : 교통안전시설 등 인프라 구축 비용은 국비 60%, 자율주행 유상운송 지원은 국비 20% 지원을 전제로 작성함.

※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인프라 구축비는 국비 60%를 지원받았으며, 향후에도 국토교통부에서는 시범운행지구의 구축비용은 60%를 지원할 예정임.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구분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세입	국비		1,920,000	240,000	240,000	150,000	150,000	2,700,000
	소계(a)		1,920,000	240,000	240,000	150,000	150,000	2,700,000
세출	인프라 구축		3,200,000	-	-	-	-	3,200,000
	유상운송 사업 지원		700,000	1,200,000	1,200,000	750,000	750,000	4,600,000
	소계(b)		3,900,000	1,200,000	1,200,000	750,000	750,000	7,800,000
□ 총 비용(a-b)			1,980,000	960,000	960,000	600,000	600,000	5,100,000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국비		1,920,000	240,000	240,000	150,000	150,000	2,700,000
시비	지방세수입	1,980,000	960,000	960,000	600,000	600,000	5,100,000
	세외수입						
	지방채 등						
민간							
기타							
합계		3,900,000	1,200,000	1,200,000	750,000	750,000	7,800,000

5. 덧붙이는 의견 : 없음

6. 작성자 : 도시교통실 교통정보과 김진구(02-2133-4963)

II.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1.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조성(인프라 구축비용)

○ 인프라 구축 : 3,200,000천원

2. 자율주행자동차 여객운송 지원

○ 1차년도 : 14대 * 50,000천원/년 = 700,000천원

○ 2차년도 : 24대 * 50,000천원/년 = 1,200,000천원

○ 3차년도 : 30대 * 40,000천원/년 = 1,200,000천원

○ 4차년도 : 30대 * 25,000천원/년 = 750,000천원

○ 5차년도 : 30대 * 25,000천원/년 = 750,000천원

* 1차~2차년도는 대당 연간 50,000천원, 3차년도는 대당 연간 40,000천원, 4차년도~5차년도는 25,000천원, 6차년도부터는 미지원

⇒ 현재 수행 중인 학술용역 결과를 토대로 지원금액은 변경될 수 있음(축소 등)

[별지 제2호서식]

입법예고결과 요약서		
의견제출자	제 출 의 견	조 치 내 용
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율주행자동차 유상운송취지인 수요대응을 위해서는 실시간 사업계획 변경을 위한 제도마련이 필요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시간 승객의 예약호출 등에 실시간 운행 노선 등을 변경될 수 있는 자율주행자동차 수요대응 유상운송 취지에 맞게 전자적 방법을 통해 실시간 노선 변경 신청이 가능하도록 조례에 규정 - 조례 제정안 제9조제3항을 신설하여 실시간 사업 계획변경 규정 마련